

동신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신규 대조표

순	조/항	현행 2022. 10. 01. 시행	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	개정사유
1	제3조	<p>제3조 【적용근거】 본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8조, 제17조,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, 제31조, 「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(제3781호)」에 의거 -----</p>	<p>제3조 【적용근거】 본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조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및 「동신초등학교 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 -----</p>	<p>〈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〉 초·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에 따른 항목을 규정에 반영하고 자 함</p>
2	제4조	<p>제4조 【학교 구성원의 책무】</p> <p>① 교직원, 학생, 학생의 보호자 등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 30조 및 제 31조, 제 32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 및 교직원,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.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④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,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 【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】</p> <p>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·보호·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, 학교 및 교원의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)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,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.</p>	<p>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) 교육 3주체인 학생, 교직원, 학부모의 책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변경함.</p>

순	조/항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행 2022. 10. 01. 시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정사유</p>
3	제5조 제1항	<p>제5조 【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】 ① 학생들의 생활교육과 관련 징계 사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를 둔다. <중략></p>	<p>제5조 【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】 ① 학생들의 포상 및 생활교육과 관련 징계 사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를 둔다. <중략></p>	<p>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내용인 ‘포상’ 추가.</p>
4	제6조	<p>제6조 【기능】 ①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는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. ②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는 심의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, 학생·학부모는 통보 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또한 학교장은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 【기능】 ①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는 학생의 포상 ----- <중략> ③ ‘학생생활교육위원회’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1.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2.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3.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. 4. 제5조에 따른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피해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함.</p>

순	조/항	현행 2022. 10. 01. 시행	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	개정사유
5	제7조	신설	<p>제7조 【위원의 개척·기피 및 회피】</p> <p>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.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<p>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p>	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시 위원들의 개척·기피 및 회피의 의무를 명시함.
6	제8조 (기본품행) 4항	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.	④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	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학생과 교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함.
7	제9조 (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) 제11항, 제12항	신설	<p>-----</p> <p>⑪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.</p> <p>⑫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사전동의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, 녹화, 녹음 등을 할 수 없다.</p>	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학생의 수업권을 지키기 위함.

순	조/항	현행 2022. 10. 01. 시행	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	개정사유
8	제10조 (학습에 관한 권리)	<p>제10조 【학습에 관한 권리】 (인권조례 5조)</p> <p>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를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.</p>	삭제	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학교생활규정 개정점과 대립됨.
9	제10조 (시설이용 및 환경) 4항	④ 방과 후,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	④ 방과 후,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장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	휴일 및 방과 후 시설 사용 허가의 주체는 학교장임.
10	제11조 (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) 2항	②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,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,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	삭제	초등학교는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음.
11	제12조	<p>제12조 【휴식을 취할 권리】 (인권조례 11조)</p> <p>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·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12조 【휴식을 취할 권리】</p> <p>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 시간(식사시간을 포함한다.)을 보장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에서 교육활동,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강당, 도서관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용규칙을 지킨다.</p> <p>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.</p> <p>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.</p>	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학생들의 휴식 시간에 주의할 점을 명시하고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생활지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 위함.

순	조/항	현행 2022. 10. 01. 시행	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	개정사유
12	제13조	제13조 【사적 소유물에 대한 존중】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,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,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,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.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(절도행위 포함)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.	삭제	<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>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소유물을 점검하거나 입수할 수 있음.
13	제13조	신설	제13조 【개인 소유물】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.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.	<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>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함.

순	조/항	현행 2022. 10. 01. 시행	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	개정사유
14	제14조	신설	<p>제14조 【소지·사용 금지 물품】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</p> <p>②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</p> <p>③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·사용을 금지한 물품</p> <p>1. 소지 금지 물품</p> <p>가. 성냥, 라이터, 폭죽, 미용 기구(드라이기, 고데기)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</p> <p>나. 칼, 쇠파이프, 공구류, 고무총,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</p> <p>다.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</p> <p>라.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</p> <p>마. 인권침해, 혐오표현,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</p> <p>바.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</p> <p>사. 담배, 주류, 부탄가스, 본드, 마약, 향정신성 약물</p> <p>아. 그 밖에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매체물, 청소년유해매체물·청소년유해약물 등</p>	<p><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>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함.</p>

순	조/항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행 2022. 10. 01. 시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정사유</p>
15	제15조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	<p>제15조 【소지 물품 조사】</p> <p>①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(전 학년·특정 학년·특정 집단 등) 대상으로 정기적·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.</p> <p>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. 다만,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.</p>	<p>〈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함.</p>

순	조/항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행 2022. 10. 01. 시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정사유</p>
16	제16조	<p>제15조 【사생활의 자유】 (인권조례 10조)</p> <p>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.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,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지양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. (단 사적기록물에 대한 검사행위가 아니라 인성교육이나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선생님 과 대화 글쓰기, 독서 감상문 쓰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)</p>	<p>제16조 【학생 개인물품 관리】</p> <p>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.</p> <p>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</p> <p>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.</p> <p>④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제12조 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「별표 1」과 같다.</p>	<p>〈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함.</p>
18	<p>제18조 (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) 2항</p>	<p>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삭제</p>	<p>초등학교는 실내 및 실외에서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음.</p>

순	조/항	현행 2022. 10. 01. 시행	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	개정사유
19	제18조 (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) 4항, 5항	제15조 제3호, 제4호	④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. ⑤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.(단 사적기록물에 대한 검사행위가 아니라 인성교육이나 글쓰기 교육 차원에서 선생님과 대화 글쓰기, 독서 감상문 쓰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)	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기 위함.
20	제20조 (여가활동) 2항	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.	② 여가시간에는 교사의 허가 이후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.	학교 특별실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.
21	제27조 (통신기기 관리)	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교사의 요구에 응한다.	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·관리할 수 있다.	<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>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함.
22	제4장 및 제28조	제4장 어린이회 제27조 【회원】 다모임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-6학년 학생으로 한다.	제4장 학생 자치회 제28조 【회원】 학생 자치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3-6학년 학생으로 한다.	학생 자치 운영기구의 명칭 변경 및 참여하는 학생들의 범위를 재설정하기 위함.
23	제29조	제28조 【권리 및 의무】 다모임 회원은-----	제29조 【권리 및 의무】 학생 자치회원은-----	학생 자치 운영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
24	제30조	제29조 【금지활동】 다모임 회원은-----	제30조 【금지활동】 학생 자치회원은-----	학생 자치 운영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
25	제31조	제30조 【협의·지원 사항】 다모임에서 협의-----	제31조 【협의·지원 사항】 학생 자치회에서 협의-----	학생 자치 운영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

순	조/항	현행 2022. 10. 01. 시행	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	개정사유
26	제32조	제27조 【승인】 다모임 에서-----	제32조 【승인】 학생 자치회 에서-----	학생 자치 운영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
27	제33조	제28조 【학급회 임원】 학급 다모임 임원은 학년 초 4-6학년 -----	제33조 【학급회 임원】 학생 자치회 임원은 학년 초 3-6학년 -----	학생 자치 운영기구의 명칭 변경 및 참여하는 학생들의 범위를 재설정하기 위함.
28	제34조	제29조 【직무 및 선출】 다모임 임원의 직무 및 선출은 학년 초 4-6학년 -----	제34조 【직무 및 선출】 학생 자치회 임원의 직무 및 선출은 학년 초 3-6학년 --	학생 자치 운영기구의 명칭 변경 및 참여하는 학생들의 범위를 재설정하기 위함.
29	제35조	제30조 【 다모임 회의 】 학생회 심의·의결기관으로 전체 다모임 회의 를 둔다. 전체 다모임 회의 및 학급 다모임 회의 는 학년 초 4-6학년 다모임 회의 -----	제35조 【 학생 자치 회의 】 학생회 심의·의결기관으로 전체 학생 자치 회의 를 둔다. 전체 학생 자치 회의 및 학급 자치 회의 는 학년 초 3-6학년 학생 자치 회의 -----	학생 자치 운영기구의 명칭 변경 및 참여하는 학생들의 범위를 재설정하기 위함.

순	조/항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현행 2022. 10. 01. 시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개정사유</p>
30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8조 (훈계,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.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<중략> 5. 기타 학급 내에서 학생과 교사가 협의 하에 정한 규칙에 의한 교육적 조치</p>	<p>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및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. <중략> ⑥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43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>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함.</p>

순	조/항	현행 2022. 10. 01. 시행	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	개정사유
31	제41조 (징계의 심의원칙) 제4항		<p>④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징계 행위의 심각성·지속성·고의성 2.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.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.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장애 여부,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.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	<p>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.</p>
32	제37조	<p>제37조 【재심의 부의】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42조 【재심의 부의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	<p>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재심하는 경우를 명시하기 위함.</p>

순	조/항	현행 2022. 10. 01. 시행	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	개정사유
33	제43조	<p>제38조 【징계의 종류와 기간】</p> <p>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(학생의 징계 등)의 규정</p> <p>1. 학교 내 봉사 : 3일 이내</p> <p>2. 사회봉사 : 3일 이내</p> <p><중략></p> <p>4. 출석정지 : 학교폭력 또는 ----- 이 경우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3조 【징계의 종류와 기간】</p> <p>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(학생의 징계 등)의 규정</p> <p>1. 학교 내 봉사 : 3일 10시간 이내</p> <p>2. 사회봉사 : 3일 20시간 이내</p> <p><중략></p> <p>4. 출석정지 : 학교폭력 또는 ----- 이 경우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,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.</p>	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징계 시간을 명확히 하고 출석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.
34	제47조 (심의 확정 및 재심요구)	<p>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-----</p>	<p>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여부-----</p>	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재심 요구 기간을 통일하기 위함.
35	제50조 (개정안의 발의) 제1항	<p>1.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</p> <p>2. 재직 교원의 과반수</p> <p>3. 학부모대표(학부모회 의결서 첨부)</p> <p>4. 학생회 대표(학생회의 의결서 첨부)</p> <p>5.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의 발의</p>	<p>1. 관련 법령(법률·대통령령·부령, 자치법규, 행정규칙을 포함한다)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</p> <p>2. 교사회의 의결</p> <p>3. 학부모회의 의결</p> <p>4. 학생 자치회의 의결</p> <p>5.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</p>	전북교육인권센터-4704(23.11.03.) 각 자치기구의 명칭 최신으로 변경하기 위함.
36	부칙 제3조	신설	제3조 【시행일】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	새로운 학교생활규정 공포일을 작성하기 위함.

순	조/항	현행 2022. 10. 01. 시행	개정 안 2023. 12. 18. 시행	개정사유
37	별표 1	신설	수업시간 분리에 관한 내용과 위험물품 압수에 관한 내용 ※세부내용은 다음 장에 기재함(14p)	<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>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 거함.
38	별표 2	신설	분리 장소 및 기간에 대한 내용 ※세부내용은 다음 장에 기재함(14p)	<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>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 거함.
39	붙임 1	신설	행동 성찰문 ※세부내용은 다음 장에 기재함(15p)	<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>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 거함.

■ 동신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[별표 1]

○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규정 (물품보관)

[제12조제 9항에 대한 학칙 규정]

요건	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	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	당일	교실 지정 장소	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 행동수정 약속 및 확인 후 되돌려줌
2	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시) 흉기, 라이터, 레이저빔 기기 등	3일	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	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·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
3	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예시) 술, 담배 등			
4	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(예시) 도색잡지 등			

■ 동신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[별표 2]

○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(학생분리 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)

[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]

생활지도	요건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	
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	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	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(40분 이내)	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,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	행동성찰문 작성 후 과제부여	
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	가	1일 2회 이상 수업시간에 지각*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등 (점심시간 내 20분 내외)	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(20분) 보장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나	① 3호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	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(60분 이내)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	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
기타	*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※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				

* 지각: 수업 시종 울린 후 수업에 참여하면 지각으로 판단함

